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수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2. 09

삼 척 시

목 차

CONTENTS

제1장 계획의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1.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2

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2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3

1.5 계획의 내용 3

제2장 대상지역 설정 6

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7

제3장 대안의 설정 9

3.1 대안의 설정 10

3.2 대안의 비교 · 검토 11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 12

4.1 평가항목의 설정 13

4.2 평가범위 및 방법의 설정 14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15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근거 16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 16

5.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18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5 계획의 내용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강원도 종합계획,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국토공간의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
-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합리적 정비를 통하여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전체적인 시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필요

1.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동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공개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1.22.>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근거

- 본 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하고자 함

1.3.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의 개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바, 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2. 25 :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계약
- 2021. 03. 02 :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022. 0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2. 09. :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2.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1.5 계획의 내용

1.5.1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수립

나. 위　　치 : 삼척시 행정구역 전역

다. 계획시행자 : 삼척시

라. 승인기관 : 강원도

마. 계획의 범위

○ 면적 : 1,191.729㎢

○ 범위 :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계획

바. 계획수립기간

○ 기준년도 : 2020년

○ 목표연도 : 2030년

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주요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

〈표 1-3〉 도시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구분	대상지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삼척시 행정구역	삼척시 교동, 정라동, 남양동, 성내동, 도계읍, 원덕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노곡면, 근덕면, 가곡면	1,191,728,725.6	삼척 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강고 제2019-322호 (2019.8.2.)반영
변경	삼척시 행정구역	〃	〃	

〈표 1-4〉 도시관리계획 입안(안) 주요내용

구분	내용	개소	비고
용도지역	민원해소/실과 수요조사 반영	16	
	자연환경보전지역 조정	7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변경에 따른 조정	28	
	하천시설 변경에 따른 조정	38	
	합계	89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1개소(폐지 1개소)	1	
	고도제한 완화(변경 4개소)	4	
	방재지구 지정(신설 2개소)	2	
	취락지구 조정(변경 1개소)	1	
	합계	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변경 1개소)	1	
	합계	1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표 1-5〉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총 계			1,191,728,725.6	-	1,191,728,725.6	100.00	
도시지역	도시지역 합계		79,879,563.6	-	79,879,563.6	6.69	
	주거지역	소 계	9,989,911.1	감) 298,199.2	9,691,711.9	0.80	
		제1종일반주거지역	1,601,856.4	감) 1,006.4	1,600,850	0.13	
		제2종일반주거지역	7,721,226.2	감) 297,192.8	7,424,033.4	0.62	
		제3종일반주거지역	381,721	-	381,721	0.03	
		준주거지역	285,107.5	-	285,107.5	0.02	
	상업지역	소 계	996,845	-	996,845	0.08	
		일반상업지역	996,845	-	996,845	0.08	
	공업지역	소 계	7,748,923.9	-	7,748,923.9	0.66	
		전용공업지역	1,161,400	-	1,161,400	0.11	
		일반공업지역	5,535,458.9	-	5,535,458.9	0.46	
		준공업지역	1,052,065	-	1,052,065	0.09	
	녹지지역	소 계	56,228,792.2	증) 298,199.2	56,526,991.4	4.74	
		보전녹지지역	3,759,011	증) 70,839.2	3,829,850.2	0.32	
		생산녹지지역	1,092,496	-	1,092,496	0.09	
		자연녹지지역	51,377,285.2	증) 227,360	51,604,645.2	4.33	
	미지정		4,915,091.4	-	4,915,091.4	0.41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합계		1,111,849,162	-	1,111,849,162	93.31	
	관리지역	소 계	167,067,143	증) 331,887.8	167,399,030.8	14.05	
		보전관리지역	35,353,725	증) 215,346.1	35,569,071.1	2.98	
		생산관리지역	44,845,665	증) 92,798.3	44,938,463.3	3.77	
		계획관리지역	86,867,753	증) 23,743.4	86,891,496.4	7.3	
	농림지역		926,943,254	감) 158,572.5	926,784,681.5	77.78	
	자연환경보전지역		17,838,765	감) 173,315.3	17,665,449.7	1.48	

〈표 1-6〉 용도지구 결정(변경)

구분	기정	변경내역			변경후
		신설	변경	폐지	
총 계	55	2	5	1	56
경관지구	6	-	-	1	5
고도지구	17	-	4	-	17
방재지구	-	2	-	-	2
보호지구	3	-	-	-	3
취락지구	27	-	1	-	27
개발진흥지구	8	-	-	-	8

〈표 1-7〉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교동택지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 단32 허용용도 추가(노유자시설)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분		평가대상지 선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반영 여부 검토	삼척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수립 전·후에 대한 대안 설정 및 분석의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 검토	계획지구
■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서식지 보전	▪ 생태자연도 및 문헌자료를 통한 동·식물상 서식환경 훼손여부 검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보전	▪ 주변 지형 및 생태축에 미치는 영향 검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주변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 주요지점의 수계 및 수질현황 분석 및 계획지구 인근수계 영향 검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 인근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기상) ▪ 공사진행에 따른 투입장비 및 토사운반차량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대기질) ▪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토양) ▪ 투입장비로 인해 소음·진동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소음·진동)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 시행시 발생하는 오수, 생활폐기물, 분뇨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범위	삼척시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공사투입공사 인부 및 장비운용에 의해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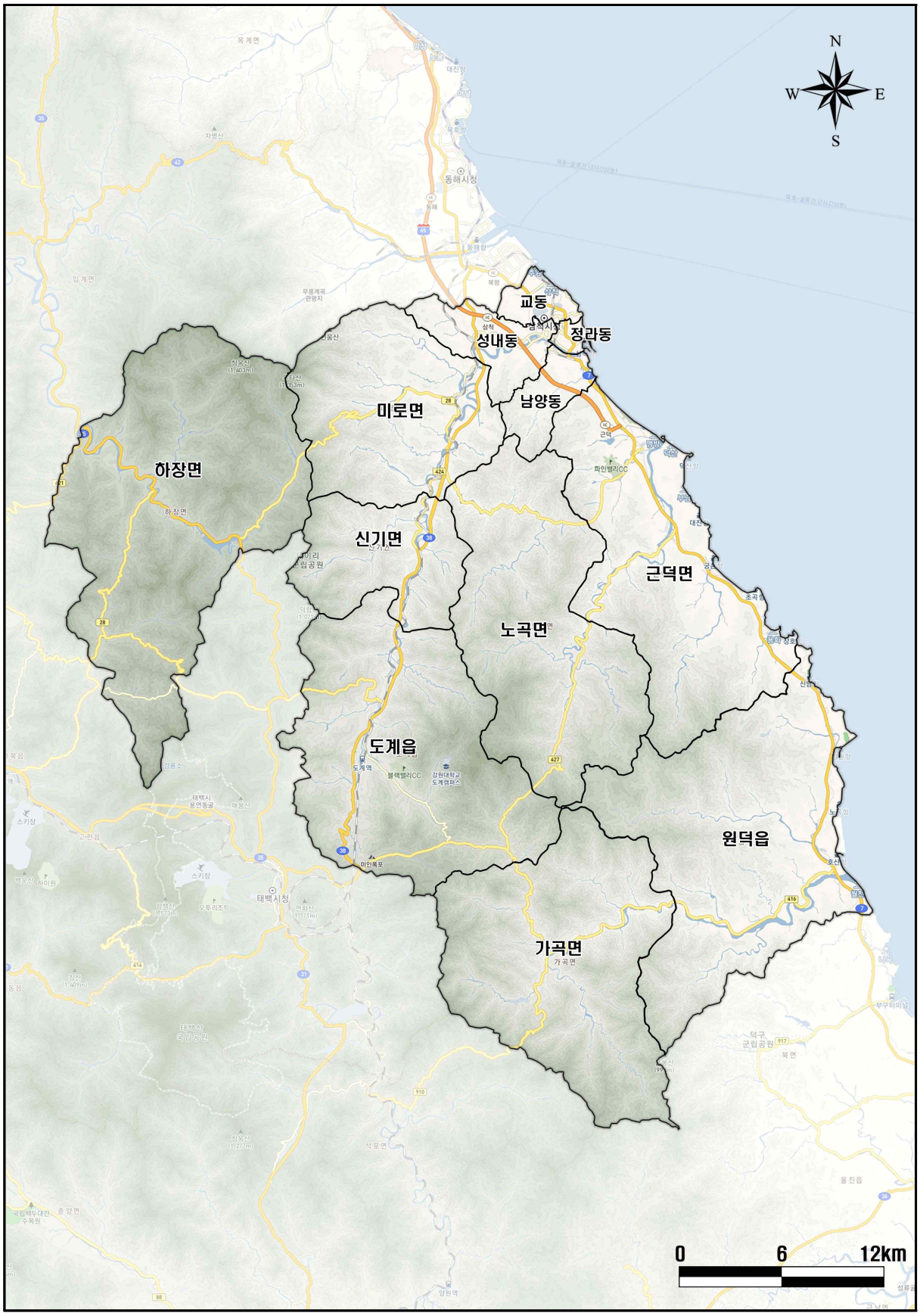

(그림 2-1) 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설정

3.2 대안의 비교·검토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설정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의 종류 및 설정은「전략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 2015. 12, 환경부」,「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1. 12. 30, 환경부고시 제2021-300호」의 [별표 4]에 의거하여 설정하였음

〈표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사유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여부	선정 및 제외사유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비교·검토함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본 계획은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이외에 별도의 대안이 없음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본 계획은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이 아님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 본 계획은 개발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님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본 계획은 개발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님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에 따라 검토

3.2 대안의 비교 · 검토

3.2.1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 검토

- 계획 수립시(Action) 및 계획 미수립시(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비교·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 '대안 1'을 선정하였음

〈표 3-2〉 **계획의 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 · 분석**

구 분	대 안 1 (계획수립시(Action))	대 안 2 (계획미수립시(No Action))
장 점	▪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상위 관련 계획과 부합함 ▪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가능	▪ 계획 미수립으로 현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단 점	▪ 도시관리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환경질 및 자연환경의 영향	▪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저해 ▪ 난개발 발생 우려
선 정 안	○	
선정사유	▪ 체계적·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1안을 선정함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

4.1 평가항목 설정

4.2 평가범위 및 방법의 설정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

4.1 평가항목 설정

- 평가항목 선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17.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환경부고시 제2021-300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정함

〈표 4-1〉 평가항목 선정

구분		항목		선정구분		선정(제외) 사유
				선정	제외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적정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 계획 수립 전·후에 대한 대안별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 예상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토사유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의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질	○		▪ 계획시행에 따른 수질변화 예상
			수리·수문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해양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악취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온실가스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토양	○		▪ 계획수립에 따른 토양 영향
			소음·진동	○		▪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위생·공중보건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일조장해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전파장해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환경기초시설의 적성성		○		▪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 계획수립에 따른 폐기물발생 영향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계획수립시 주요지표 설정 및 토지이용 변화 요인 분석

4.2 평가범위 및 방법의 설정

- 상기 설정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을 설정하였음

〈표 4-2〉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삼척시	▪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관련 계획의 적정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 대안별 환경영향 비교·분석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영향예측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지형의 변화 예측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경관의 변화 예측
	수환경의 보전	수질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토사유출에 의해 주변 하천에 미치는 영향예측 ▪ 오염원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 영향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오염 영향예측
		토양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 오염 영향예측
		소음·진동		▪ 장비가동시 예측지역에 대한 정량적 소음·진동 영향예측
	환경기초시설의 적성성		삼척시	▪ 용수공급량 및 오수발생량 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예측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지구	▪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예측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근거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

5.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본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회 심의를 실시함

〈표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

- 심의대상 : 2030삼척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결정,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결정,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결정
- 심의위원 : 위원장 외 8인

〈표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삼척시	도시과장	황 ○○	-
위원	원주지방환경청	주 무 관	이 ○○	-
	삼척시	건설과장	심 ○○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 수	권 ○○	-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이 ○○	-
	삼척시	환경과장	이 ○○	-
	삼척시 이·통장협의회	회 장	김 ○○	-
	자연보호중앙연맹 삼척시협의회	회 장	김 ○○	-
	관동대학교	교 수	신 ○○	-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

삼 척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30년 삼척 도시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요청**

1. 도시과-8984호(2022. 5. 25.), 11134호(2022. 6. 30.) 및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3116호(2022. 5. 30.) 관련 사항입니다.

2. '2030년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서면심의)를 요청드리오니 붙임의 양식을 통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양식) 1부.
2. 위원 명단 1부. 끝.
2. 위원 명단.

삼 척 시 장

수신자 건설과장, 환경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

주무관	신현근	도시계획담당	전인표	도시과장	전결 2022. 7. 26. 황대주
협조자					

시행 도시과-13033 (2022. 7. 26.) 접수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도시과 (교동) / www.samcheok.go.kr
전화번호 033-570-3876 팩스번호 033-570-3182 / wembley@korea.kr / 비공개(6)

시민을 섬기는 공감과 소통의 열린 행정

(그림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공문

5.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계획·사업의 개요

○ 국토종합계획, 강원도 종합계획 및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에 부응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

○ 용도지역·지구·구역과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합리적 계획을 통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삼척시 개발·정비 및 보전의 기틀 마련

□ 심의·의결(안)

1. 총괄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개발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특성상 공사로 인한 영향의 예측 및 분석보다는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방향에 부합하여야 함.

○ 본 협의회 심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본 계획과 관련되는 상위계획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자연·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삼척시 전역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기초조사 결과 및 주변 토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재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범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평가 진행에 있어 본 심의의견 및 관련 법규의 이행을 준수하기 바람

○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하여야 함.

○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은 난개발 및 환경부하 증가의 우려가 큰 용도지역으로서, 양호 산림 및 경작지, 수변역 등 환경 민감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과도한 변경은 지양하고 기 개발지 정비 중심의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그림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블록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삼척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평가 진행에 있어 본 심의 의견 및 관련 법규 이행을 준수하기 바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의 설정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악화 및 해수면 상승과 각종 대규모 해안개발사업으로 해안침식이 전 범위에 걸쳐 가속화 되고 있는 바 체계적인 연안침식 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방재지구 추가 신설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본 계획은 강원도 삼척시 행정구역 일원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보전대책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함.

○ 해안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안공간 및 연안환경에 대한 영향검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방재지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대상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용도지역 등을 추진하는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적 평가가 필요함.

○ 각 용도지역·지구·구역별로 성격, 여건, 환경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 설정하여야 함.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설정된 지역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

○ 본 계획은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삼척시 전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함.

○ 각 항목별로 영향예측 범위를 설정하고, 계획수립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는데 가능한 정량적인 예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정성적인 예측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전반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방재지구 설정에 있어서 추가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더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예시:용화~궁촌 레일바이크 구간)

3. 대안

○ 삼척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구상안 마련

○ 주변 용도지역을 부합되게 변경하는 획일적 계획보다는 블록별 특성 및 현황 주변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이용 구상안 마련

○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부분과 비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구의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대안의 설정분야는 계획비교만을 설정하여 제시하였으나 행정계획 특성상 도시관리계획임을 감안하여 비교적 적정하다고 판단됨.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 내 개발 및 보전지역 등 공간구조와의 부합성, 토지이용계획 기본 방향과 연계·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전체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 환경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등 고려

○ 개별계획은 해당 계획의 성격, 계획부지 일원의 입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action/no action,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 여부, 부지 경계, 고도지구 높이 등의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면서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자연경관 우수지역, 산림축 및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등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방향 및 부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 부지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등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타 행정계획 및 시의 실과 계획과 부합된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인지 검토하여야 함.

○ 인근지역 주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 및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자연환경 등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필요

○ 해당 계획의 성격,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검토하여야 함.

○ 기 개발지 정비 중심의 용도지역 변경

-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내 난개발의 우려가 큰 용도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기개발되어 있거나 상위계획상 개발계획이 기수립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 개발된 구역 경계를 벗어나 주변의 양호한 산림지 및 경작지를 포함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시 인접한 보전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연결성 또는 정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래와 같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통한 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지양함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상 '보전대상지역'과 토지적성평가 '가'등급지

·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지자체 지정 보호자원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등)의 서식·출현지역 및 그 서식환경의 영향권 내의 지역
- 식생보전Ⅲ등급이며 급경사지(경사도 20° 이상)의 지역(해당 지역이 1만㎡ 이상 단일 패치인 구역에 포함된 곳)

- 아래와 같이 환경이 양호하거나 환경악화 우려가 있는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통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가급적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환경 양호 지역>
- 식생보전 Ⅲ, Ⅳ등급지
- 주능선축 및 소능선축에 포함되거나 연접하여 위치한 지역
- 양호한 육수생태계 지역(하천, 소하천, 산간계류, 농수로, 저수지 등)의 영향권 내의 지역
- 토지적성평가 나, 다등급지
- 국토환경성평가 1, 2등급지
- 농경지

<환경악화 우려 지역>
- 수해 등 재해빈발지역
- 보전적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공장, 창고, 주거지 등이 혼재되어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환경 악화가 진행 또는 예상되는 지역

* 대상지 둘레의 75% 이상이 보전적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을 경우 보전적 용도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림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접근
- 대상지 전체가 보전적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인 블록에 대해서는 기 개발되었더라도 현 토지이용을 보전적 용도지역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

○ 현재 용도 및 입지여건, 발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것임.

○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적합하게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환경질 및 자연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해야 할 것임.

4.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평가준비서에 제시한 평가항목, 범위, 방법에 따라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에 대하여 중점검토하여야 함.

○ 야생생물 보호구역,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관련 지역·지구·구역현황, 해당지역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각종 최신문헌 등 현황자료를 검토하여야 함.

○ 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등) 및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주요 하천, 능선축 등 환경 관련 지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역·지구·구역의 현황, 전국 자연환경조사 등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각종 문헌 등 현황자료를 검토하여 제시하되, 문헌이 현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현황자료를 제시

- 주요 자연경관 및 생태우수지역, 생태축, 하천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에 대한 영향 및 보전방안 강구
- 주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시설 분포 현황, 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분포 등을 고려한 영향 및 보전방안 마련
-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의 경우,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의 자료를 활용하되, 출처를 명확히 제시

* 해당지역에 5년 이내의 최신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확대

○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면 및 현황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토지적성평가도, 용도지역 세분도, 지형도, 현황 사진(항공사진 등), 생태·자연도 등을 제시
- 개별 계획별 도면 및 결정(변경) 사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설명자료(기정/변경 비교) 작성·제시

○ 구역별 변경계획에 따른 변경사유 등 자료를 제시하여 사업진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들을 제시하여야 함

- 위치도, 위성사진, 생태자연도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및 현황 등
- 백두대간, 주요 능선축 및 하천축 등 생태·녹지축 등의 인접 여부 등

○ 평가방법에 현지조사 병행 및 최신문헌자료 활용 등 구체적인 예측 및 분석기법을 추가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각 계획부지별로 구체적인 결정·변경 사유 및 계획부지에 관한 현황 자료(도면)를 추가 제시하여야 함

- 특히 용도지역 상향지역(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중 면적이 500㎡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블록별 자료 작성
- 현황 자료(도면): 계획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1) 기정 및 변경용도가 표시된 도면
(2) 해상도 높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
(3) 생태·자연도
(4) 식생보전등급도(II, III, IV등급 이상 지역만 표시)
(5) 경사도면(경사도 20° 이상 지역만 표시)
(6) 표고도
(7) 국토환경성평가도
(8) 토지적성평가도

○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수계 현황도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수계 현황도에는 하천개황도(등고선 제외),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 하천의 구분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하천/호소 수질등급, 계획홍수위선, 물 흐름 방향, 소유역 내 유선, 저수지(이용현황 및 규모 등) 등을 개략적인 이격거리와 함께 표시
- 계획지구와 하천/호소와의 거리는 명확히 표시
- 계획지구 하류의 침수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계획지구의 오수처리 및 용수공급 현황을 파악

○ 또한 계획부지를 포함한 도시의 전체 자연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주능선(생태)축 및 소능선(생태)축이 표시된 도시 개황도면(각 계획부지 경계 및 번호 표시) 도면

○ 도시기본계획, 환경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계획과 연계 부합한 계획 수립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용도지역 변경대상(06-06)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100m 내외의 구역으로 p.70의 수환경의 보전에 해당하므로,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 평가서에 제시한 바에 따라 진행할 것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주민등의 의견수렴,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개 등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방법,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주민설명회 시 인포그래픽,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준수 및 평가준비서에 제시한 의견수렴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주민들에게 해당 계획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여 토지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되나, 평가서의 초안 공고·공람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함.

○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사항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관련계획 부합여부 검토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 지침(환경부, '12.10.)」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시"를 작성·제시하여야 함.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은 사전에 판단하여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및 제시하기 바람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평가준비서에 대한 수정·추가 심의·의결(안) 총괄표>

구분	평가준비서 내용	제기된 수정의견	최종 심의·의결(안)
1. 총괄	-	-	-
2. 평가 대상지역 설정	• 삼척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용도지역: 89개소 - 용도지구: 8개소 -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	방재지구 추가 지정(신설)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	「국토계획법」 상 요건에 따른 방재지구의 지정은 타당하며, 향후 지속적인 확인·검토를 통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삼척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것으로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삼척시 전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준비서 상 제시된 안을 최종 심의(안)으로 결정하겠음
3. 대안	•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 여부, 부지 경계, 고도지구 높이 등의 대안 추가할 것	고도지구 높이 설정에 대한 검토내용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종 심의(안)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검토한 내용을 제시하기 바람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환경기준의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수정의견 없음	수정의견은 없으므로 평가준비서 상 제시된 안을 최종 심의(안)으로 결정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주민의견 수렴	수정의견 없음	수정의견은 없으므로 평가준비서 상 제시된 안을 최종 심의(안)으로 결정하겠음

2022. 9. .

(2030년 삼척 도시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황 [redacted]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